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작성자: 남바다, 기욤 오테르(Guillaume Autere), 레오니 알라르드(Léonie Allard),

제임스 스미스(James Smith), 캐서린 루이스(Catherine Lewis)

서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은 탈북민 김영일이 2006년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해 있다. 성통만사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교육, 역량강화, 인권의식 제고, 토론을 통해 남북한의 조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화 등의 주제와 사회적 이슈를 논의할 장을 마련해 통일의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다. 성통만사는 탈북민 교육/통합 프로그램, 컨퍼런스 주최, 북한 내 인권침해 증거수집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통만사는 2012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자문단체 지위를 인정받았다.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북한은 국제인권조약 5개에 서명하고¹ 헌법에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선 이후에도 인권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권리는 보편적이라기보다 조건적이며,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2009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북한이 제출한 방대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성통만사가 수집한 목격자 증언은³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 모두가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 다수가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탈북민들은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역, 경범죄에 대한 사형,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빈번하다고 증언한다. '완전통제구역'에 구금된 정치범은 약 12만 명으로⁴, 이들은 일상적 기아와 학대에 시달린다. 완전통제구역의 사망률은 높고 수용자 중에는 아동도 있다. 인권옹호자들이 북한에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정보와 증거의 주요 출처는 탈북민과 그들의 증언이다.

¹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² A/HRC/WG.6/6/PRK/1

³ 2011~2013년 사이 성통만사는 '숨실 자유만 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

⁴ 통일연구원

1. 성통만사는 주로 북한 형사체계의 문제에 관한 2013년의 증언 10개를 선택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직접 경험에 기초한 증언의 형태로 제공된 증거는 북한에 인권침해가 만연해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에 의해 용인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⁵.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들은 2005~2011년 사이에 한국에 도착했으며, 나이는 인터뷰 당시 26~55세로 다양하다. 안전과 탈북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가명을 사용한다. 이들의 증언은 형사체계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의 3개 핵심영역, 즉 3조, 5조, 9조가 위반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증언은 북한 당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북한이 비준한 조약)의 많은 부분, 즉 6조, 7조, 9조를 위반하는 사례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성통만사는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다른 조항들도 동시에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심단어: 사형, 공개처형, 임의구금, 고문, 자백 강요, 노동교화소, 성적 학대, 영아살해.

I.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3조, ICCPR 6조)

2 북한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사형이 폭넓게 집행된다. 북한이 2009년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⁶와 달리 탈북민들은 국제법상 심각하지 않은 범죄에도 사형이 적용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다. 극도의 검열로 인해 외국 CD나 DVD 등을 소지하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되는데, 이 역시 세계인권선언 19조 위반이다. 다른 나라로 탈북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세계인권선언 13조 위반이기도 하다.

- 3 공개처형은 특히 북부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성통만사와 인터뷰를 가진 탈북민 대부분은 처형을 목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증언한다. 당국은 공개처형을 이용해 공포를 주입하고, 암시장, 종교활동, 탈북 등의 불법 행위를 막으면서 통제력을 유지한다. 다음은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최화영(여, 탈북민)의 증언이다. *"제가 본 공개처형은 동네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열다섯 살이었고, 그 사람은 돼지와 토끼를 훔친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 그의 부인과 자식들, 어린 남자아이 하나와 누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인은 처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앓을 자리를 가운데에 만들어서 처형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아이들은 너무 어렸고, 그저 울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⁵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에 정의됨.

⁶ A/HRC/WG.6/6/PRK/1, section IV B 34.

- 4 피해자들은 처형 전 공개적 판결을 받은 후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한다. 간부들이 처형 대상에게 재갈을 물려 입을 막았다는 보고도 있다. 공개처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의 극단적 형태이며, 폭넓게 실시된다. 다음은 함경북도 길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김새원(남, 탈북민)의 증언이다. *“그들은 돌을 천으로 싸서 그걸 입에 올리고 발로 차서 이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 입에 삼각대를 놓고 발로 찼습니다. 그러면 이가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러면 그들은 남자를 처형장에 묶었습니다. 그때쯤 남자는 이미 초주검이었습니다. 사수가 각각 세 발씩 쏘았습니다. 발과 머리가 떨어지고 다 터졌습니다. 끔찍했죠.”*
- 5 북한 구금시설의 사망률은 영양실조, 구타, 고문, 가혹한 노역, 혹독한 기후의 영향으로 매우 높다. 구금시설과 수용소 간수들은 수용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탈출과 소요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식량 접근을 제한한다. 기아는 수용자들에 대한 고문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상철(남, 평안북도 신의주 노동교화시설에 수감되었다 2010년 풀려남)의 증언이다. *“[수용소에서] 백 명 중에 열 명이 죽습니다. 약해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80~90%는 엄청 허약합니다.”*
- 6 북한에는 학대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국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수용자에게 아무 권리가 없고 간수들이 생사를 결정하는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사망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박희진(여, 탈북민)은 어떤 사람이 강제노역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증언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던져둡니다. 사람들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해서, 아파서 기절하는 거라서, 심장은 뛰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옮겨서 버리는 거죠.”*

II. 임의구금(세계인권선언 9조, ICCPR 9조)

- 7 북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된다. 체포된 이들은 구금시설에서 고문의 위협 속에 취조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결국 이들은 죄명에 따라 수용소나 강제노역시설로 보내진다. 문윤희(여, 함경북도 무산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된 적이 있음)의 증언이다. *“제 남편이 피가 흥건할 만큼 두들겨 맞아서 걷거나 말하지도 못하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한국 목사를 만났고 그를 따라 한국에 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저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다 말했는데 저는 왜 계속 부정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 북한에서는 하지 않은 일을 구타 때문에 인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8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⁷에는 독립적 법원, 방어권, 항소권을 포함한 재판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결수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를 추정받을 권리를 일상적으로 박탈당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10조와 11조 위반이다. 이상철(남, 평안북도 신의주 노동교화시설에 수감되었다 2010년 풀려남)의 증언이다. *“네, 재판이 있죠.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끝납니다. [...] 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같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변호사가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거기 있는 것인지, 검사처럼 있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판사를 도우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9 '노동을 통한 재교화'는 북한에서 일상적인 처벌로, 수용자들은 '교화소'나 '집결소'라고 부르는 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일한다.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보통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강제노역시설에는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용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세계인권선언 5조는 수시로 부정, 위반된다. 심길현(남, 2007~2010년 강제노역 시설에 수감)의 증언이다. *“강제노역시설에 가면 1, 2, 3으로 분류되는 과가 있습니다. 저는 2과였습니다. [...] 그 일은 여기서 가장 힘들었고 구덩이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발을 헛디뎠다 빠졌고, 떨어지는 중에 여기저기 부딪혀서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광산에 갇혀 있던 사람들 중 매달 40명 정도가 죽는 게 흔했습니다.”*

III.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세계인권선언 5조, ICCPR 7조)

10 북한의 구금시설 대부분에서 미결수들과 수용자들은 고문으로 교정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증언에 따르면 고문은 북한에서 범죄이지만⁸ 자백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다.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과 송환자들이 구금되는 국가안전보위부 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가장 심각하고 비이성적으로 일어난다. 김광혁(남, 함경북도 청송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되었다 2010년 풀려남)은 자백 내용을 똑같이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당한 일에 대해 증언한다. *“열 장짜리 종이를 주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일부러 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에 한 치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또 죽을 줄 알라.' [...] 두 발로 걸어 들어갔을지 몰라도, 나올 때는 일어설 수 없어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 얼굴 전체에 멍이 들었습니다. 고문이 그렇게 가혹했습니다.”*

⁷ A/HRC/WG.6/6/PRK/1Section IV D 38.

⁸ A/HRC/WG.6/6/PRK/1 Section IV C 36.

11 구금시설에서는 성적 학대도 만연해 있으며 용인된다.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 수용자들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학대를 고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여성들은 많은 경우 고문을 피하기 위해 몸을 포기한다. 손미향(여, 양강도 김형직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되었다 2009년 풀려남)의 증언이다. *“2009년에 시설에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 26살이었고 아주 예뻐요. 밀수하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그녀에게 벌을 줬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 발을 들고 양팔을 벌려서 새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나가서 늦게 들어온 뒤로는 그런 종류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 아가씨에게 ‘그날 밤에 나가서 뭐 했어?’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계속 울었습니다. [...] 나중에 그녀는 손가락 머리를 삼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12 중국에서 송환되어 수용되는 임신부들은 민족적 차별에 의한 폭력의 대상이 되어, 중국인의 피를 가진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당한다. 손미향(여, 양강도 김형직 국가안전보위부에 구금되었다 2009년 풀려남)의 증언이다. *“북한 정부는 혼혈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커다란 통나무를 들고 달리는 등 강제노역을 해야 합니다. 아기는 다 죽고 [...] 대부분의 임신부는 유산 때문에, 아니면 피를 흘려서, 배고파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권고

성통만사는 북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고, 인권 개념의 해석과 관련된 국내 법규를 재평가할 것.
- UN 특별보고관 및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국내법 및 실제 적용시의 인권 이행을 평가하도록 허용할 것.
- 사형 집행을 개혁하고,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 재판 절차의 진행과 그 전후를 통틀어 모든 주민들을 법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하도록 할 것. 형사소송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수용소 및 강제노역시설의 수용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
-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이행을 검토할 것. 고문과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금시설에서 이러한 관행을 방지할 것. 취조 과정에서 고문, 강요, 구타 관행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법당국 간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 여성을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 사실을 보고하는 체계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것.